

원·하도급 등에서의 안전·보건조치의무

원·하도급업체간 법상 안전관리책임구분

- Q** 당사(석유화학제조업체)내 협력업체 A, B, C, D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각 사의 작업자가 본인의 실수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수행하다가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당사와 협력업체간의 책임구분은?
- 당사의 단지내 별도부지에서 신규공장 건설을 위해 F사 종합건설업체에 일괄 도급, 공사계약에 의하여 공장건설 작업중 F사 작업자 또는 그 하도급업체인 G사의 작업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각 사별 안전관리 법적 책임구분은?
 - H사는 산재보상보험에 일괄 가입한 승강기 제작·수리전문업체로서 당사의 단지내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보수작업계약을 맺고 작업수행중 H사의 소속직원이 실족 추락에 의한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 책임범위는(H사는 본사에 산재가입되어 있음)?

- A** (1) 귀사의 사업주(도급인) 또는 협력업체(A, B, C, D사)의 사업주(수급인)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본인의 실수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등 전적으로 근로자 과실로 인해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귀사 및 협력업체의 사업주 모두는 동법상 법적 책임이 없음.
- 그러나, 동법상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책임 소재는 먼저 귀사

가 동법 제18조(안전보건총괄책임자) 및 동법시행령 제23조(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)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, 귀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18조, 제29조(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·보건조치) 및 동법시행령 제23조, 제24조(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) 규정에 의한 법적 책임이 없음.

- 따라서, 협력업체(A, B, C, D사)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사업주에게 동법상 법적 책임이 있음.
 - 다만, 협력업체 소속근로자가 귀사 시설물의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인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귀사의 사업주에게도 동법상 법적 책임이 있음.
- (2) 귀사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별도 사업으로 종합건설업체인 F사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행하도록 하고, 동 건설업체에서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사업의 일부를 G사에 도급하여 공사를 행할 경우, 종합건설업체 F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,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, 제2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, 하도급업체인 G사에 대한 안전·보건상의 조치의무와 책임을 대하여야 함
- 따라서, F사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F사의 사업주가 동법상 법적 책임이 있고
 - G사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G사의 사업주가 동법상 법적 책임이 있음은 물론

Q & A

F사의 사업주에게도 동법 제18조,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, 제24조 규정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음.

- (3) H사 소속근로자가 귀사에서 승강기보수작업 중 실족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등 승강기보수작업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책임은 H사의 사업주에게 있음.
- 다만, 승강기보수작업과 관련이 없는 귀사의 일반 시설물 또는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인해 H사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귀사의 사업주에게 개구부등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준수여부 등 동법상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고, H사의 경우에는 동 재해자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등 동법상의 일부 책임이 있음.

(산안 68307-368, '93. 8. 24)

공동수급사업에서 산업재해발생 책임은

- Q** 4개회사 A, B, C, D가 동일한 25%씩의 지분으로 민간자본을 출자하기로 하고 A사를 공동수급 대표사로 선정하여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사업수행중 발생되는 산업재해에 관한 행정적·법적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만 있는 것인가?
- 만약 공동도급중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산업재해발생 책임에 대해서만은 공동수급체 각사가 구간을 정하여 책임관리 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작성하여도 주관회사는 산업재해관련 책임을 분담할 수 없는지?

- 기타 산업재해발생의 행정적·법적 책임을 공동참여 회사 각사가 분담하여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,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?

A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와는 별개이고, 동법에서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에 있어서 경영주체(개인기업 : 그 사업주, 법인 : 법인 그 자체)를 말하므로 4개회사가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사업을 수행중일 때 발생된 산업재해의 책임은 4개 회사 모두에게 있다고 사료됨.

- 산업재해예방 이행의무 주체인 사업주는 4개 회사 모두가 해당되지만 각사가 책임구간을 정하여 안전관리를 할 때의 행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각사의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자(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안전관리자 제외) 및 공동이행 당사자간의 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분담이행방식은 분담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주의 책임이나, 공동수급체가 공사수급 및 시공을 공동으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은 예산회계법의 제반규정에서 동 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고
- 또한,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개념도 이와 부합되고 있으므로 공동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됨.

(건안 68307-184, '94. 7. 19)

서로믿고 방심말고 서로먼저 안전예방
안전관리 따로없다 너와내가 안전요원